

의안번호	제 21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08월 30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
----------	----

발의연월일 : 2022년 08월 30일
발의자 : 김호경, 이동우, 김종필,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계 법규 등을 변경하고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규 변경(안 제4조 및 제16조)

- 「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소방장비관리규칙」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나.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 신설(안 제4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및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총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을 “규칙 제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 제2조2항”을 “규칙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면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2. (생략)</p> <p>③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소방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 ~ 5. (생략)</p> <p>④ <u>규칙 제2조제2항</u>에 따라 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전문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 ③ (생략)</p> <p>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p>	<p>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u>규칙 제2조제2항</u>-----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④ <u>규칙 제2조제2항</u>----- ----- ----- -----.</p> <p>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략)

④ ~ ⑥ (생략)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① (생략)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

-----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 ⑤ (생략)

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생략)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한국소방안전원 -----

-----.

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29.>